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 2차 의회 운영 위원회 의

소통과 공존, 신뢰받는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32호)

2024. 8.

의회 운영 전문위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132호
- (발 의 자) 임채성,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상병현,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 (발 의 일) 2024년 8월 16일
- (회 부 일) 2024년 8월 19일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가. 저출산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출산율 하락과 함께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가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고, 세종시 역시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특별휴가 제도 도입이 필요함.
- 나.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소속 직원의 출산·육아 장려를 위해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확대 기준에 따라 육아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안 제12조제2항)
- 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연 12일) 육아 특별휴가 부여함(안 12조제12항)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형제·자매 사망시 경조사 휴가 일수 개선함(안 별표3)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가.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빌의되었음.
- 나.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12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u>5세</u>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u>24개월</u> 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자녀 1명마다 각각 <u>24개월</u> 까지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되, 최저 연령의 자녀가 <u>5세</u>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u> -- <u>36개월</u> -- ----- -----. ----- ----- <u>36개월</u> -- ----- ----- ----- <u>8세 또는</u> <u>초등학교 2학년</u> 을 ----- ---.

-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24. 7. 2.)을 반영하려는 것임.
- 현행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가 5세를 초과하는 경우 활용할 수 없어 초등 학교 입학 및 적응 시기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36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지원받게 되면 육아공무원의 경력단절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러한 각종 육아지원 제도¹⁾가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해 조직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조직문화의 한계성 개선에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육아 특별휴가 조항 신설(안 제12조제12항)

안 제12조제12항 관련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7일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연 12일) 육아 특별휴가 부여

1) <근무시간 관련 각종 육아지원 제도>

- **모성보호시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임신 기간중 1일 2시간씩 활용
- **육아시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 활용
- **가족돌봄휴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자녀 또는 손자녀의 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활용
- **유연근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자녀연령에 관계 없이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행정의 연속성이나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변경하여 활용
- **육아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휴직

-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상위법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해 우리 시 합계출산율은 0.97명(2023년 기준)으로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특별휴가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의 선제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처럼 공공 영역에서의 육아 특별휴가 부여와 같은 적극적인 육아지원 제도 확대는 공무원 개인에게는 경력 단절이나 경제적 감소를 줄여주고, 사회적으로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동기부여로 실질적 저출생 대책이 될 것으로 사료됨.

○ 형제·자매 사망시 경조사 휴가 일수 개선(안 별표3)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자녀	1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본인	20	입양	본인	20

-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 개정조항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 수 감소에 따른 장례문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종합의견

-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7일의 육아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출산장려 및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한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확대된 육아시간(1일 2시간의 단축근무와 연 7일의 육아 특별휴가 등) 사용으로 인한 업무 대행자의 업무 과중이나 업무 공백 가능성³⁾에 대한 대비와 함께 실질적인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근무 환경 조성 및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 (참고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고 2) 타 시·도의회 특별휴가 관련 자치법규 등 현황

3) 참고자료 5. 타 시·도의회의 특별휴가 자치법규 등 현황 (비교)

참고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하고, 같은 항 중 “24개월”을 각각 “36개월”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5세를”을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 사망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란 다음에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

별표 3의 사망의 대상란 중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를 “형제자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u>5세</u>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u>24개월</u> 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자녀 1명 마다 각각 <u>24개월</u> 까지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되, 최저 연령의 자녀가 <u>5세</u>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③ ~ ⑪ (생 략) <u><신 설></u>	제12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8세</u>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u>36개월</u> ----- ----- -----. ----- <u>36개월</u> ----- ----- ----- <u>8세</u>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 ③ ~ ⑪ (현행과 같음) ⑫ <u>8세</u>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소속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생 략)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불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 개정으로는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임채성

[불임3] 관례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2023. 7. 18., 2024. 7. 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 사산 또는 조산(早產)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2024. 7. 2.>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2024. 7. 2.>
-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 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024. 7. 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 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0. 10. 20., 2024. 7. 2.>
-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⑯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4. 7. 2.>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 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2024.07.12 조례 제25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겸임 업무 관련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업무 공무원 소속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 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담당 부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

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8.]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자녀 1명마다 각각 24개월까지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되, 최저 연령의 자녀가 5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아시간의 계산은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허가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2. 육아시간의 허가를 월 단위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의 합이 20일 미만이더라도 허가받은 개월수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 이 경우 개월수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따른 역에 의한 계산 방법에 따른다.

3. 육아시간의 허가를 월 단위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일수의 합이 20일이 되면 1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받으려면 1일 근무시간이 최소 4시간(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3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12. 18.>

⑨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의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잔여 일수는 이어서 도래하는 장기재직휴가 산정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신설, 2023. 12. 18.>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제1호에서 이동, 2023. 12. 18.]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제2호에서 이동, 2023. 12. 18.]<개

정, 2023. 12. 18.>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제3호에서 이동, 2023. 12. 18.]<개정, 2024. 7. 12.>

⑩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자녀 균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4. 7. 12.>

⑫ 그 밖에 특별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 12. 18.>[제11항에서 이동, 2024. 7. 12.]

제1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4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2514호, 2024.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12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참고 2 / 타 시·도의회 특별휴가 관련 자치법규 등 현황 (2024.07.기준)

서울(24.7.15.)	부산(23.12.27.)	대구(24.5.17.)	인천(24.7.17.)
제29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② 출산휴가 ③ 보건휴가 ④ 임신검진휴가 ⑤ 육아시간 ⑥ 교육지도시간 ⑦ 유산사산휴가 ⑧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⑨ 난임치료시술휴가 ⑩ 수업휴가 ⑪ 재해구호휴가 ⑫ 특별성과 휴가 ⑬ 장기재직휴가 ⑭ 군입영휴가 ⑮ 가족돌봄휴가 ⑯ 심리안정휴가	제15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② 보건휴가 ③ 수업휴가 ④ 재해구호휴가 ⑤ 장기재직휴가 ⑥ 군입영휴가 ⑦ 특별성과 휴가	제15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② 모성보호시간 ③ 육아시간 ④ 수업휴가 ⑤ 재해구호휴가 ⑥ 군입영휴가 ⑦ 장기재직휴가 ⑧ 특별성과 휴가 ⑨ 육아시간 제한조건 ⑩ 성폭력피해자 휴가	제13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② 장기재직휴가 ③ 육아시간 ④ 수업휴가 ⑤ 입영동행휴가 ⑥ 난임 배우자 동행휴가 ⑦ 특별성과 휴가 ⑧ 육아시간 제한조건 ⑨ 새내기휴가
광주(24.3.20.)	대전(24.5.17.)	울산(23.9.21.)	경기(24.7.18.)
제14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② 여성보건휴가 ③ 임신검진휴가 ④ 육아시간 ⑤ 육아시간 제한조건 ⑥ 수업휴가 ⑦ 재해구호휴가 ⑧ 군입영휴가 ⑨ 장기재직휴가 ⑩ 특별성과 휴가 ⑪ 배우자동행 휴가	제13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② 수업휴가 ③ 특별성과 휴가 ④ 장기재직휴가 ⑤ 군입영휴가 ⑥ 성폭력피해자 휴가 ⑦ 보육휴가(생후 2년미만, 연 5일 / 돌아상 연 10일)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① 경조사휴가 ② 수업휴가 ③ 장기재직휴가 ④ 입영휴가 ⑤ 특별성과 휴가 ⑥ 보육휴가(4세이하, 연 3일) ⑦ 선거사무 휴가 ⑧ 자기계발휴가 ⑨ 성폭력피해자 휴가	제12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② 모성보호휴가(20일) ③ 부모휴가(10세이하, 연 5일) ④ 돌봄응원시간 (9~10세, 2시간) ⑤ 군입영휴가 ⑥ 수업휴가 ⑦ 장기재직휴가 ⑧ 재난시 장기재직휴가 ⑨ 특별성과 휴가 ⑩ 성폭력피해자 휴가 등
강원(24.5.10)	충북(24.4.5.)	충남(24.3.20.)	전북(24.3.29.)
제11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② 수업휴가 ③ 장기재직휴가 ④ 특별성과 휴가 ⑤ 군입영휴가 ⑥ 재난대응 특별휴가 ⑦ 임신검진휴가	제15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② 수업휴가 ③ 재해구호휴가 ④ 장기재직휴가 ⑤ 군입영휴가 ⑥ 특별성과 휴가 ⑦ 육아시간 ⑧ 육아시간 제한 ⑨ 선거사무 휴가 ⑩ 자녀 양육휴가(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연 7일)	제15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② 보육휴가(2세 미만, 연간 5일 이내) ③ 성폭력피해자 휴가 ④ 군입영휴가 ⑤ 수업휴가 ⑥ 자기성찰특별휴가 ⑦ 특별성과 휴가	제16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② 육아시간 ③ 수업휴가 ④ 장기재직휴가 ⑤ 군입영휴가 ⑥ 보육휴가(4세이하, 연 5일) ⑦ 특별성과 휴가 ⑧ 선거사무 휴가 ⑨ 성폭력피해자 휴가
전남(24.6.13.)	경북(24.5.23.)	경남(24.3.14.)	제주(23.12.12.)
제11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② 군입영휴가 ③ 육아시간 ④ 육아시간 제한 ⑤ 보육휴가(8세이하, 연5일) ⑥ 수업휴가 ⑦ 장기재직휴가 ⑧ 특별성과 휴가 ⑨ 선거사무 휴가 ⑩ 학습휴가 ⑪ 돌봄시간(6~8세, 2시간)	제14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② 삭제 ③ 수업휴가 ④ 장기재직휴가 ⑤ 군입영휴가 ⑥ 특별성과 휴가 ⑦ 육아시간 제한 ⑧ 삭제 ⑨ 모성보호휴가 ⑩ 보육휴가(8세이하, 연 5일)	제12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② 여성보건휴가 ③ 수업휴가 ④ 장기계발휴가 ⑤ 재해구호휴가 ⑥ 군입영휴가 ⑦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⑧ 육아시간 ⑨ 특별성과 휴가 ⑩ 선거사무 휴가	제14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② 수업휴가 ③ 재해구호휴가 ④ 장기재직휴가 ⑤ 장기재직휴가 운영사항 ⑥ 군입영휴가 ⑦ 특별성과 휴가 ⑧ 가족돌봄휴가 ⑨ 성폭력피해자 휴가 ⑩ 보육휴가(4세이하, 연 5일)